더샵 광양라크포엠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설치 바로가기

한국부동산원과 더샵 광양라크포엠 홈페이지를 통해 게제된 '더샵 광양라크포엠'입주자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 36페이지]

공고 구분	품목	적용타입	규격 / 제품명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중도금(10%) 2023.04.17.	잔금(80%) 입주지정일
기존공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84A, B, C, D	LG 빌트인 김치냉장고(K221PR14BL1/R1) + 냉장고 설치공간 + 수납장	2,050,000	205,000	205,000	1,640,000
			삼성 빌트인 김치냉장고(RQ22K5L(R)01EC) + 냉장고 설치공간 + 수납장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정정공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84A, B, C, D 115A, 115B	LG 빌트인 김치냉장고(K221PR14BL1/R1) + 냉장고 설치공간 + 수납장	2,050,000	205,000	205,000	1,640,000
			삼성 빌트인 김치냉장고(RQ22K5L(R)01EC) + 냉장고 설치공간 + 수납장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 안내사항

▣ 더샵 광양라크포엠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사이버견본주택**(www.더샵광양라크포엠.com)** 운영과 방문예약 관람으로 병행운영 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을 최소화하고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방문가능 일자를 확인하여 사전에 방문예약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확인 제출서류 및 공급계약(예비당첨자 포함)시 방문 예약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관람 신청 당첨자(계약자)는 예약한 해당 날짜 및 시간에 본인 확인을 거쳐 입장이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관람은 사전에 방문 예약하신 고객 외 동반1인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방문객은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에서 실시하는 방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열화상카메라, 전신소독기, 비접촉체온계, 소독발판, 손소독제 등)
- 기타 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 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 일정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더샵 광양라크포엠은 대표 분양상담전화 **(☎1566-5535)**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전화가 많아 상담전화 연결대기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전화상담의 경우 상담자께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실 경우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확인하고,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관련서류 등을 직접 발급받아 해당사항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이 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신청 전 반드시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관련하여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9.22.(목)**입니다.
(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주택소유, 세대원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양시)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비조정대상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전라남도 광양시 민영주택 일반공급 모든 주택형은 100%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모두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단지 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 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 후 재공급	O	O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2.(목)**현재 광양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양시 6개월 **(2022년 03월 22일 이전부터 계속거주)**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 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주자 저축 관련 사항**

입주자저축 종류	기한	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모집공고 당일 까지	규모별 / 지역별 기준에 따른 예치기준금액 납입
청약저축	입주자모집공고 전일 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 (청약예금으로 전환 후 청약저축으로 재전환 불가)
청약부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 까지	규모별 / 지역별 기준에 따라 납입 85㎡ 초과 주택에 청약 시 청약예금으로 전환
청약예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 까지	규모별 / 지역별 기준에 따라 예치기준금액 납입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
※ **청약저축 → 청약예금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 (단, 청약예금으로 전환 이후 청약저축으로 재전환 불가)
※ **청약부금 → 청약예금 전환 기준**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기준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신청 가능.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변경 없이 청약신청 가능)
※ **청약예금 신청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 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 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 ~ 14:00)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①, ② : 청약자 또는 세대원)		결과
부적격 예시	특별공급 당첨 ① + 특별공급 당첨 ②	①, ② 부적격
	특별공급 당첨 ①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②	① 부적격, ②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참여 불가
	특별공급 당첨 ① + 특별공급 낙첨 ②	① 부적격 (※ ② 특별공급 신청 이력으로 ①당첨자의 부적격)

■ 2021.05.2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공급규칙 제35조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제7항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따라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 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로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 까지 (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사업주체 인터넷 홈페이지 **(www.더샵광양라크포엠.com)** 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3항에 따라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하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으면 소명 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계약체결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비조정대상지역)으로「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분양권 전매는 계약금(분양대금의 10%)이 완납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및 본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전매제한기간은 향후「주택법」및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또한, 잔금 일부 납입 시에는 제한될 수 있으며, 잔금 완납 시에는 전매가 불가합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전매제한 없음 (「주택법 시행령」제73조제1항 별표3)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향후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해외 거주 인정 기준**
-2021.05.28.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 및 필요 시 세대구성원)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해외거주 인정 기준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적용사례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가능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가능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음.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주택소유 판정기준**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라 주택(분양권 등 포함) 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따라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 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4항 및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주택형별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분양권 등' 매수자 (2018.12.10. 이전 공급분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 주택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등" 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 원(수도권은 1억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 2)의 기준에 따름.)

■ **투기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공급 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의심이 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어 계약일정 및 서류제출 등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비조정대상지역인 광양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 3조 규정에 의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등은 동법 제8조 및 제반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 및 법인)는 동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여야함.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상기 법령에 따른 부동산취득신고 및 자본거래신고를 하여야함.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따라 해당주택건설지역인 광양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2022.03.22.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노부모부양자)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1순위	2순위			
일정	**2022.10.04.(화)**	**2022.10.05.(수)**	**2022.10.06.(목)**	**2022.10.17.(월)**	**2022.10.18.(화)~2022.10.22.(토) (5일간)**	**2022.10.28.(금)~2022.11.02.(수) (6일간)**
방법	인터넷 청약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10:00 ~ 14:00)	인터넷 청약 (09:00~17:30)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가능	더샵 광양라크포엠 견본주택 방문 (10:00~17:00) ※방문예약자만 입장가능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사업주체 견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견본주택 : 전라남도 광양시 1732-2 더샵 광양라크포엠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예약 시스템 운영 예정.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 (10:00 ~ 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 ~ 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앱 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을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 원 초과~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10억 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분양(전매)계약서에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100%, 6개월 이내200%, 6개월 초과30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과 - 제37633호(2022.09.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348-4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3층 ~ 지상29층 9개동, 총920세대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69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89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42세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69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2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대지면적 : 45,170.00㎡
▣ 입주 시기 : 2025년 11월 예정

▣ 공급대상 (민영주택)

(단위: ㎡, 세대수)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약식 표기	세대별 주택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합계 (계약면적)		특별공급						일반 공급	합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자	계			
2022000628	084.8562A	84A	84.8562	27.1166	111.9728	66.5604	178.5332	44.8793	42	42	84	42	12	222	199	421	16
	084.8900B	84B	84.8900	27.7163	112.6063	66.5870	179.1933	44.8972	7	7	15	7	2	38	39	77	3
	084.7338C	84C	84.7338	27.0900	111.8238	66.4645	178.2883	44.8146	18	18	38	18	5	97	87	184	7
	084.9443D	84D	84.9443	27.3911	112.3354	66.6296	178.9650	44.9259	2	2	5	2	0	11	15	26	1
	115.2966A	115A	115.2966	34.7138	150.0104	90.4377	240.4481	60.9788	0	18	0	0	5	23	161	184	7
	115.1005B	115B	115.1005	35.6023	150.7028	90.2839	240.9867	60.8751	0	2	0	0	0	2	22	24	1
	134.5928	134	134.5928	45.6327	180.2255	105.5735	285.7990	71.1843	0	0	0	0	0	0	1	1	0
	137.3926	137	137.3926	46.4000	183.7926	107.7697	291.5623	72.6651	0	0	0	0	0	0	1	1	0
	157.0025	157	157.0025	53.1744	210.1769	123.1515	333.3284	83.0365	0	0	0	0	0	0	1	1	0
	159.1183	159	159.1183	53.8788	212.9971	124.8112	337.8083	84.1555	0	0	0	0	0	0	1	1	0
합 계									69	89	142	69	24	393	527	920	35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84.8562A	84.8900B	84.7338C	84.9443D	115.2966A	115.1005B	134.5928	137.3926	157.0025	159.1183
견본주택 등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115A	115B	134	137	157	159

※ 주택형의 약식표기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주택형별로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물제작물도 동일하게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상기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약식 표기	동/ 라인	층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1회	2회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023.04.17.	2023.09.18.	2024.02.16.	2024.08.16.	2025.01.16.	2025.06.16.	입주 지정일
84.8562A	84A	105동 1, 2호 106동 2호	1	3	52,842,570	287,857,430		340,700,000	10,000,000	24,070,000	34,070,000	34,070,000	34,070,000	34,070,000	34,070,000	34,070,000	102,210,000
		101동, 102동 108동 4호 104동 3, 4호, 105동 1, 2, 4호 106동 2, 4호	2	10	54,253,980	295,546,020		349,800,000	10,000,000	24,980,000	34,980,000	34,980,000	34,980,000	34,980,000	34,980,000	34,980,000	104,940,000
			3~4	20	55,479,270	302,220,730		357,700,000	10,000,000	25,770,000	35,770,000	35,770,000	35,770,000	35,770,000	35,770,000	35,770,000	107,310,000
			5~10	60	57,014,760	310,585,240		367,600,000	10,000,000	26,760,000	36,760,000	36,760,000	36,760,000	36,760,000	36,760,000	36,760,000	110,280,000
			11~20	100	57,712,710	314,387,290		372,100,000	10,000,000	27,210,000	37,210,000	37,210,000	37,210,000	37,210,000	37,210,000	37,210,000	111,630,000
		102동 108동 4호 104동 3, 4호 105동 1, 2, 4호 106동 2, 4호	21층이상	68	58,333,110	317,766,890		376,100,000	10,000,000	27,610,000	37,610,000	37,610,000	37,610,000	37,610,000	37,610,000	37,610,000	112,830,000
		101동, 102동 108동 4호 104동 3, 4호 105동 1, 2, 4호 106동 2, 4호	최상층	10	64,164,870	349,535,130		413,700,000	10,000,000	31,370,000	41,370,000	41,370,000	41,370,000	41,370,000	41,370,000	41,370,000	124,110,000
		104동 1호	1	1	54,998,460	299,601,540		354,600,000	10,000,000	25,460,000	35,460,000	35,460,000	35,460,000	35,460,000	35,460,000	35,460,000	106,380,000
		102동 1, 2호 103동, 104동 107동 1호, 109동 2호	2	6	56,456,400	307,543,600		364,000,000	10,000,000	2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109,200,000
			3~4	12	57,743,730	314,556,270		372,300,000	10,000,000	27,230,000	37,230,000	37,230,000	37,230,000	37,230,000	37,230,000	37,230,000	111,690,000
			5~10	36	59,325,750	323,174,250		382,500,000	10,000,000	28,250,000	38,250,000	38,250,000	38,250,000	38,250,000	38,250,000	38,250,000	114,750,000
			11~20	60	60,054,720	327,145,280		387,200,000	10,000,000	28,720,000	38,720,000	38,720,000	38,720,000	38,720,000	38,720,000	38,720,000	116,160,000
		102동 1, 2호 103동, 104동 107동 1호, 109동 2호	21층이상	32	60,706,140	330,693,860		391,400,000	10,000,000	29,140,000	39,140,000	39,140,000	39,140,000	39,140,000	39,140,000	39,140,000	117,420,000
		103동 ,104동 107동 1호	최상층	3	66,770,550	363,729,450		430,500,000	10,000,000	33,050,000	43,050,000	43,050,000	43,050,000	43,050,000	43,050,000	43,050,000	129,150,000
84.8900B	84B	106동 1호	1	1	55,541,310	302,558,690		358,100,000	10,000,000	25,810,000	35,810,000	35,810,000	35,810,000	35,810,000	35,810,000	35,810,000	107,430,000
		103동 3호 106동 1호	2	2	57,014,760	310,585,240		367,600,000	10,000,000	26,760,000	36,760,000	36,760,000	36,760,000	36,760,000	36,760,000	36,760,000	110,280,000
			3~4	4	58,302,090	317,597,910		375,900,000	10,000,000	27,590,000	37,590,000	37,590,000	37,590,000	37,590,000	37,590,000	37,590,000	112,770,000
			5~10	12	59,915,130	326,384,870		386,300,000	10,000,000	28,630,000	38,630,000	38,630,000	38,630,000	38,630,000	38,630,000	38,630,000	115,890,000
			11~20	20	60,644,100	330,355,900		391,000,000	10,000,000	2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117,300,000

주택형	약식 표기	동/ 라인	층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1회	2회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023.04.17.	2023.09.18.	2024.02.16.	2024.08.16.	2025.01.16.	2025.06.16.	입주 지정일
			21층이상	15	61,295,520	333,904,480		395,200,000	10,000,000	29,520,000	39,520,000	39,520,000	39,520,000	39,520,000	39,520,000	39,520,000	118,560,000
		109동 1호	2	1	59,325,750	323,174,250		382,500,000	10,000,000	28,250,000	38,250,000	38,250,000	38,250,000	38,250,000	38,250,000	38,250,000	114,750,000
			3~4	2	60,675,120	330,524,880		391,200,000	10,000,000	29,120,000	39,120,000	39,120,000	39,120,000	39,120,000	39,120,000	39,120,000	117,360,000
			5~10	6	62,350,200	339,649,800		402,000,000	10,000,000	3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120,600,000
			11~20	10	63,110,190	343,789,810		406,900,000	10,000,000	30,690,000	40,690,000	40,690,000	40,690,000	40,690,000	40,690,000	40,690,000	122,070,000
			21층이상	2	63,792,630	347,507,370		411,300,000	10,000,000	31,130,000	41,130,000	41,130,000	41,130,000	41,130,000	41,130,000	41,130,000	123,390,000
		103동 3호 106동 1호	최상층	2	67,437,480	367,362,520		434,800,000	10,000,000	33,480,000	43,480,000	43,480,000	43,480,000	43,480,000	43,480,000	43,480,000	130,440,000
		105동, 106동 3호	1	2	52,780,530	287,519,470		340,300,000	10,000,000	24,030,000	34,030,000	34,030,000	34,030,000	34,030,000	34,030,000	34,030,000	102,090,000
		101동, 102동 105동, 106동 108동 3호	2	5	54,176,430	295,123,570		349,300,000	10,000,000	24,930,000	34,930,000	34,930,000	34,930,000	34,930,000	34,930,000	34,930,000	104,790,000
			3~4	10	55,401,720	301,798,280		357,200,000	10,000,000	25,720,000	35,720,000	35,720,000	35,720,000	35,720,000	35,720,000	35,720,000	107,160,000
			5~10	30	56,937,210	310,162,790		367,100,000	10,000,000	26,710,000	36,710,000	36,710,000	36,710,000	36,710,000	36,710,000	36,710,000	110,130,000
			11~20	50	57,635,160	313,964,840		371,600,000	10,000,000	27,16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111,480,000
		102동, 105동, 106동, 108동 3호	21층이상	26	58,255,560	317,344,440		375,600,000	10,000,000	27,560,000	37,560,000	37,560,000	37,560,000	37,560,000	37,560,000	37,560,000	112,680,000
84.7338C	84C	101동, 102동, 105동, 106동, 108동 3호	최상층	5	64,087,320	349,112,680		413,200,000	10,000,000	31,320,000	41,320,000	41,320,000	41,320,000	41,320,000	41,320,000	41,320,000	123,960,000
		103동 2호	1	1	54,920,910	299,179,090		354,100,000	10,000,000	25,410,000	35,410,000	35,410,000	35,410,000	35,410,000	35,410,000	35,410,000	106,230,000
		103동 107동 2호	2	2	56,378,850	307,121,150		363,500,000	10,000,000	26,350,000	36,350,000	36,350,000	36,350,000	36,350,000	36,350,000	36,350,000	109,050,000
			3~4	4	57,666,180	314,133,820		371,800,000	10,000,000	27,180,000	37,180,000	37,180,000	37,180,000	37,180,000	37,180,000	37,180,000	111,540,000
			5~10	12	59,248,200	322,751,800		382,000,000	10,000,000	2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114,600,000
			11~20	20	59,977,170	326,722,830		386,700,000	10,000,000	28,670,000	38,670,000	38,670,000	38,670,000	38,670,000	38,670,000	38,670,000	116,010,000
			21층이상	15	60,628,590	330,271,410		390,900,000	10,000,000	29,090,000	39,090,000	39,090,000	39,090,000	39,090,000	39,090,000	39,090,000	117,270,000
			최상층	2	66,693,000	363,307,000		430,000,000	10,000,000	3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129,000,000
		104동 2호	1	1	52,423,800	285,576,200		338,000,000	10,000,000	2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101,400,000
			2	1	53,804,190	293,095,810		346,900,000	10,000,000	24,690,000	34,690,000	34,690,000	34,690,000	34,690,000	34,690,000	34,690,000	104,070,000
			3~4	2	55,029,480	299,770,520		354,800,000	10,000,000	25,480,000	35,480,000	35,480,000	35,480,000	35,480,000	35,480,000	35,480,000	106,440,000
84.9443D	84D		5~10	6	56,549,460	308,050,540		364,600,000	10,000,000	26,460,000	36,460,000	36,460,000	36,460,000	36,460,000	36,460,000	36,460,000	109,380,000
			11~20	10	57,231,900	311,768,100		369,000,000	10,000,000	2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110,700,000
			21층이상	5	57,852,300	315,147,700		373,000,000	10,000,000	2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111,900,000
			최상층	1	63,637,530	346,662,470		410,300,000	10,000,000	31,030,000	41,030,000	41,030,000	41,030,000	41,030,000	41,030,000	41,030,000	123,090,000
		107동 3, 4호	2	2	60,324,374	328,614,205	32,861,421	421,800,000	10,000,000	32,180,000	42,180,000	42,180,000	42,180,000	42,180,000	42,180,000	42,180,000	126,540,000
			3~4	4	61,683,031	336,015,426	33,601,543	431,300,000	10,000,000	33,130,000	43,130,000	43,130,000	43,130,000	43,130,000	43,130,000	43,130,000	129,390,000
			5~10	12	63,384,927	345,286,430	34,528,643	443,200,000	10,000,000	34,320,000	44,320,000	44,320,000	44,320,000	44,320,000	44,320,000	44,320,000	132,960,000
			11~20	20	64,157,217	349,493,439	34,949,344	448,600,000	10,000,000	34,860,000	44,860,000	44,860,000	44,860,000	44,860,000	44,860,000	44,860,000	134,580,000
			21층이상	16	64,857,998	353,310,911	35,331,091	453,500,000	10,000,000	35,350,000	45,350,000	45,350,000	45,350,000	45,350,000	45,350,000	45,350,000	136,050,000
115.2966A	115A	101동 2호 108동 1, 2호 109동 3, 4호	2	5	62,769,956	341,936,404	34,193,640	438,900,000	10,000,000	33,890,000	43,890,000	43,890,000	43,890,000	43,890,000	43,890,000	43,890,000	131,670,000
			3~4	10	64,200,122	349,727,162	34,972,716	448,900,000	10,000,000	34,890,000	44,890,000	44,890,000	44,890,000	44,890,000	44,890,000	44,890,000	134,670,000
			5~10	30	65,973,527	359,387,703	35,938,770	461,300,000	10,000,000	36,130,000	46,130,000	46,130,000	46,130,000	46,130,000	46,130,000	46,130,000	138,390,000
			11~20	50	66,774,419	363,750,528	36,375,053	466,900,000	10,000,000	36,690,000	46,690,000	46,690,000	46,690,000	46,690,000	46,690,000	46,690,000	140,070,000
			21층이상	33	67,503,804	367,723,815	36,772,381	472,000,000	10,000,000	3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141,600,000
		107동 3, 4호	최상층	2	71,508,267	389,537,939	38,953,794	500,000,000	10,000,000	4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150,000,000
		101동 1호	2	1	65,902,018	358,998,165	35,899,817	460,800,000	10,000,000	36,080,000	46,080,000	46,080,000	46,080,000	46,080,000	46,080,000	46,080,000	138,240,000
			3~4	2	67,389,390	367,100,555	36,710,055	471,200,000	10,000,000	37,120,000	47,120,000	47,120,000	47,120,000	47,120,000	47,120,000	47,120,000	141,360,000
115.1005B	115B		5~10	6	69,248,605	377,228,541	37,722,854	484,200,000	10,000,000	38,420,000	48,420,000	48,420,000	48,420,000	48,420,000	48,420,000	48,420,000	145,260,000
			11~20	10	70,106,705	381,902,995	38,190,300	490,200,000	10,000,000	39,020,000	49,020,000	49,020,000	49,020,000	49,020,000	49,020,000	49,020,000	147,060,000
			21층이상	5	70,864,692	386,032,098	38,603,210	495,500,000	10,000,000	39,550,000	49,550,000	49,550,000	49,550,000	49,550,000	49,550,000	49,550,000	148,650,000
134.5928	134	102동 1호	최상층	1	113,383,507	617,651,357	61,765,136	792,800,000	10,000,000	69,280,000	79,280,000	79,280,000	79,280,000	79,280,000	79,280,000	79,280,000	237,840,000
137.3926	137	109동 1호	최상층	1	115,385,739	628,558,419	62,855,842	806,800,000	10,000,000	70,680,000	80,680,000	80,680,000	80,680,000	80,680,000	80,680,000	80,680,000	242,040,000
157.0025	157	109동 3호	최상층	1	128,214,322	698,441,525	69,844,153	896,500,000	10,000,000	79,650,000	89,650,000	89,650,000	89,650,000	89,650,000	89,650,000	89,650,000	268,950,000
159.1183	159	101동 1호	최상층	1	128,714,880	701,168,291	70,116,829	900,000,000	10,000,000	80,000,000	90,000,000	90,000,000	90,000,000	90,000,000	90,000,000	90,000,000	270,000,000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본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상에 표기된 면적은 사업계획승인 기준의 면적을 적용하였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 하십시오.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청약신청 시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 일부 주택형은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표기된 주택형별 형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면적합산 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단수조정에 따른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복도,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 면적과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 시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수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용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분양가에 계산이 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오니 청약 신청 시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사업주체(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더샵 광양라크포엠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2016.08.12.개정「주택법」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매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미계약 시 계약 가능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1차 계약금 및 2차 계약금 포함)완납 시 중도금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가, 한도 축소 등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은 책임지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 공정이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 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 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일정 미숙지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10%), 중도금(1~6회차 60%), 잔금(30%)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의 책임이 아님)
- 특별공급 배정물량보다 청약 접수건수가 적을 시 미달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는 계약체결 기간 전 상기 일정 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준비하시어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방문예약제 운영예정) ※코로나19 및 사업주체 상황에 따라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당첨자 효력 상실, 그에 따른 공급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 제작물 및 입주자모집공고의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1566-5535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들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오니 유의하십시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등과 정부의 정책,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국토교통부에서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진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선행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 주십시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십시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02.21. 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계약 전 견본주택 모형도 및 배치도, 카탈로그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4A	84B	84C	84D	115A	115B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10	1	2	-	-	-	13
	장애인	전라남도	10	2	7	1	-	-	20
		광주광역시	2	1	3	1	-	-	7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10	1	2	-	-	-	13
	장기복무제대군인		5	1	2	-	-	-	8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5	1	2	-	-	-	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2	7	18	2	18	2	89
신혼부부 특별공급			84	15	38	5	-	-	142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42	7	18	2	-	-	69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12	2	5	-	5	-	24
특별공급합계			222	38	97	11	23	2	393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세대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영주택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 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 용
접수방법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2항에 따라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노부모부양자 등)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함. 단, 고령자 또는 장애인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견본주택에서 접수가능 (은행창구 접수 불가) • 인터넷 청약접수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에 가입 및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하고, 청약 접수일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 없이 청약이 가능함.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중복신청 하여 1명이라도 당첨자로 선정이 될 경우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제한]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table>
<tr><th>구분</th><th>내 용</th></tr>
<tr><td></td><td>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td></tr>
<tr><td>청약자격
청약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④ 청약저축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가 발생한 자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
(광주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라남도 및 광양시)</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 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td></tr>
</table>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세대가 없는 주택형에는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전체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4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을 부여 합니다.(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으로 전환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9호 미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일반공급에만 적용되므로 특별공급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음.)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청약자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대상세대 : 총69세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2.(목)**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등 입주자저축 불필요)

▣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추천기관	추천기관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장애인	전라남도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전남동부지방보훈지청 보상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장기복무 제대 군인	
	10년 이상 복무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당첨확정자, 예비대상자)는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에서 제외되며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함으로 계약 불가]
-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2.(목)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시 발급 유의사항
필수서류	신분증	본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모든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추가서류 (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청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모든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기타서류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청약자)	• 용도 : 서류제출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불가)
	위임장	본인(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대리인의 인장(도장)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자 중 당첨자는 해당 서류제출 기한 내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2.(목)**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가 표기**되도록(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대상세대 : 총89세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2(목)** 현재 광양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민법상 미성년(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태아나 입양자녀 포함)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 상 청약 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 자녀도 포함되며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이혼 및 재혼 자녀의 경우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됨.
  -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취소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제3항)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해당지역**(광양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거주자에게 우선공급 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① 미성년 자녀수(태아나 입양자녀 포함)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미성년 자녀수 (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 세대원 모두 무주택(신청자 및 배우자와 동일 등본 등재한 경우)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전라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계	**100**	-	-	-

유의사항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 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2.(목)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시 발급 유의사항
필수서류	신분증	본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출입국 사실증명서	본인	• 출입국사실이 있다면 "Y", 없다면 "N",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 기록대조일[출생일 ~ 2022.09.22.]**
추가서류 (해당자)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미성년 자녀가 만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점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한부모 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 가족으로 정하여 5년이 경과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 연락처,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직인 날인)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 각서		• 견본주택에 비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복무확인서	해당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기타서류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단신부임인 경우)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따라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생업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신부임 입증서류 하단 표 참조)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청약자)	• 용도 : 서류제출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
	위임장	본인(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대리인의 인장(도장)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자 중 당첨자는 해당 서류제출 기한 내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2.(목)**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가 표기**되도록(모든 정보가 표시 되도록 발급)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함
※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한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청약 신청 시 10년 이상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제출)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전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자녀)국내 거주 확인을 위하여 제출 • **출입국 사실이 있다면"Y", 없다면"N",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기록대조일 [출생일~2022.09.22.]**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셔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90일, 연간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단신부임 인정 불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대상세대 : 총142세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2(목)** 현재 광양시에 거주하거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이 7년 이내 (동일인과 이혼 후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로 청약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

• **청약자격요건 :**

-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6개월경과**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출생신고일 기준)하며, 임신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4명 이상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 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2년 9월 22일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기준 및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1) 2021.11.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3억3,100만원) 기준을 충족하는 자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2)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 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혼인기간 내 임신 중 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3)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광양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주택건설지역 **(광양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 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월평균 소득기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기준 구분	신혼부부 우선공급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 120% 이하	6,208,935원~ 7,450,721원	7,200,810원~ 8,640,971원	7,326,073원~ 8,791,286원	7,779,826원~ 9,335,790원	8,233,579원~ 9,880,294원	8,687,332원~ 10,424,797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 140% 이하	6,208,935원~ 8,692,508원	7,200,810원~ 10,081,133원	7,326,073원~ 10,256,501원	7,779,826원~ 10,891,755원	8,233,579원~ 11,527,009원	8,687,332원~ 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60% 이하	7,450,722원~ 9,934,294원	8,640,972원~ 11,521,294원	8,791,287원~ 11,721,715원	9,335,791원~ 12,447,720원	9,880,295원~ 13,173,725원	10,424,798원~ 13,899,730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초과, 부동산가액 (3.31억 원 이하)충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31억 원 이하)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기준소득(5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상위소득(2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첨제(30%)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3.31억 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원)*(N-8), 100%기준}
※ N→ 9인 이상 가구원수

※ 자산보유 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 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 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농지원부 또는 농업 경영체등록 확인서(정부24, 주민센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축산업 허가증(정부24, 주민센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필요**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가구원수 적용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기준 (연간소득÷근무월수)		상기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소득
근로자	연간소득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
사업자	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2.(목) 이후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②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①해당직장/세무서 ②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 전직자	① **금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②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①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②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세무서 또는 등기소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해당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해당직장/세무서 ②,③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해당직장 ②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견본주택 비치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2.(목)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시 발급 유의사항
필수서류	신분증		본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출입국 사실증명서		본인	• 출입국사실이 있다면 "Y", 없다면 "N",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 **기록대조일[출생일 ~ 2022.09.2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전체선택 발급**(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추가서류 (해당자)	추첨제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은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출력이 불가하므로 본인 및 세대원의 인증서 지참 후 견본주택 내방하여 증빙**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시가격 증명 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토지, 주택 등에 대한 공시가격 인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이하 국토교통부" ※ 청약자격상 무주택취급(주공규53조) 되는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 → 주택 공시가격 ※ 청약자격상 무주택취급(주공규53조) 되는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오피스텔, 상가 : [건물분] 홈텍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조회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토지분] 국토교통부 → 개별공시지가 ※ 토지 : 국토교통부 → 개별공시지가
		재산세 납부내역	본인 및 세대원	• 미등기 부동산으로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 불가한 경우 재산세 납부내역(정부24 또는 인근 주민센터)과 상기 해당하는 공시가격 증명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청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 연락처,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직인 날인)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본인 또는 해당자	• 견본주택에 비치
	복무확인서		해당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자격으로 청약신청 하는 경우 (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단신부임인 경우)		본인 및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따라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생업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발급 기준은 상기 본인의 출입국사실증명원 참조하여 발급)
	기타서류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청약자)	• 용도 : 서류제출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
	위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대리인의 인장(도장)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자 중 당첨자는 해당 서류제출 기한 내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의 경우 상기 모든 증명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함)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2.(목)**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가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함.
※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한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청약 신청 시 10년 이상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제출)**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전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자녀)국내 거주 확인을 위하여 제출 • **출입국 사실이 있다면"Y", 없다면"N",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기록대조일 [출생일~2022.09.22.]**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셔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90일, 연간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단신부임 인정 불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대상세대 : 총69세대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2(목)** 현재 광양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불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 (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미혼인 자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더샵 광양라크포엠은 60㎡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는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 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2년 9월 22일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 세액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년도 납세사실 증명을 함께 제출

※ 신청자 본인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사실 증명을 위해 사업주체에 제출하는 서류는 5년간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용이며 신청자 및 세대원별 합산소득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우선공급 기준 및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2021.11.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3억3,100만원)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광양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월평균 소득기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130% 초과 ~ 160% 이하	8,071,615원 ~9,934,294원	9,361,053원 ~11,521,294원	9,523,895원 ~11,721,715원	10,113,774원 ~12,447,720원	10,703,652원 ~13,173,725원	11,293,531원 ~13,899,730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 (3.31억 원 이하)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1인 가구	160%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160%초과, 부동산가액 (3.31억 원 이하)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자산보유 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 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 구청장)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농지원부 또는 농업 경영체등록 확인서(정부24, 주민센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축산업 허가증(정부24, 주민센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필요**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가구원수 적용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기준 (연간소득÷근무월수)		상기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소득
근로자	연간소득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
사업자	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2.09.22.(목) 이후 발급분에 한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 (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세무서 ②해당직장 ③해당직장/세무서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①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해당직장 ②세무서
	자영업자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직인 날인)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세무서 ②해당직장 ③해당직장/세무서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 2013, 2014, 2016, 2018, 2021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해당 직장에서 발급한 서류 : 직인 날인 필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받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 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2.09.22.(목) 이후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②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①해당직장/세무서 ②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 전직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②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①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①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세무서 또는 등기소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해당직장/세무서 ②,③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해당직장 ②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견본주택 비치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2.(목)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시 발급 유의사항
필수서류	신분증		본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초본			•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출입국 사실증명서			• 출입국사실이 있다면 "Y", 없다면 "N",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 **기록대조일[출생일 ~ 2022.09.22.]**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비연속적인 5개년도 소득세납부사실도 인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전체선택 발급**(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22)**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소득 증빙서류			•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상기 소득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추가서류 (해당자)	추첨제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은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출력이 불가하므로 본인 및 세대원의 인증서 지참 후 견본주택 내방하여 증빙**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시가격 증명 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토지, 주택 등에 대한 공시가격 인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이하 국토교통부" ※ 청약자격상 무주택취급(주공규53조) 되는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 → 주택 공시가격 ※ 청약자격상 무주택취급(주공규53조) 되는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오피스텔, 상가 : [건물분] 홈텍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조회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토지분] 국토교통부 → 개별공시지가 ※ 토지 : 국토교통부 → 개별공시지가
		재산세 납부내역	본인 및 세대원	• 미등기 부동산으로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 불가한 경우 재산세 납부내역(정부24 또는 인근 주민센터)과 상기 해당하는 공시가격 증명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청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공개**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여 가구원수 포함 및 소득 산정한 경우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과거 주소 변동사항 필수)**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증명서로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배우자	• 입양자녀가 있을 경우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복무확인서		해당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자격으로 청약신청 하는 경우 (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단신부임인 경우)		본인 및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따라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생업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발급 기준은 상기 본인의 출입국사실증명원 참조하여 발급)
	기타서류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청약자)	• 용도 : 서류제출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
	위임장		본인(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대리인의 인장(도장)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자 중 당첨자는 해당 서류제출 기한 내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의 경우 상기 모든 증명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함)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2.(목)**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가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함.
※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한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청약 신청 시 10년 이상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제출)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전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자녀)국내 거주 확인을 위하여 제출 • **출입국 사실이 있다면"Y", 없다면"N",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기록대조일 [출생일~2022.09.22.]**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셔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90일, 연간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단신부임 인정 불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공급세대수의 3% 범위) 대상세대 : 총24세대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2(목)** 현재 광양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보는 조항은 해당 특별공급에 미적용됨.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방법**
  ①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광양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제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이여야 하며,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 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 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만30세 미만 :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부양가족 수 산정 시 청약신청자 본인은 제외 ※ 외국인 직계 존·비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보는 조항은 해당 특별공급에 미적용됨. (유주택자에 해당)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2.(목)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시 발급 유의사항
필수서류	신분증	본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출입국 사실증명서	본인	• 출입국사실이 있다면 "Y", 없다면 "N",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 **기록대조일[출생일 ~ 2022.09.22.]**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출입국 사실증명서		• 출입국사실이 있다면 "Y", 없다면 "N",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 **기록대조일[출생일 ~ 2022.09.22.]**
추가서류 (해당자)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과거 주소변동사항 필수)**
	혼인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출입국 사실증명서		•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이 있다면 "Y", 없다면 "N",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 **기록대조일[출생일 ~ 2022.09.22.]**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 체류 중이면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청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단신부임)	본인 및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따라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생업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발급 기준은 상기 본인의 출입국사실증명원 참조하여 발급)
	복무확인서	해당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자격으로 청약신청 하는 경우 (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기타서류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청약자)	• 용도 : 서류제출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
	위임장	본인(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대리인의 인장(도장)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자 중 당첨자는 해당 서류제출 기한 내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의 경우 상기 모든 증명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함)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2.(목)**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가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함.
※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한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청약 신청 시 10년 이상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체류에 따른 직계 존·비속 부양가족 인정 기준

구분	연령	내용
직계존속	-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3년의 기간 내에 요양시설(「주민등록법」제12조에 따른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거주 하였거나,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로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최근 1년 기간 중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제출)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전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자녀)국내 거주 확인을 위하여 제출 • **출입국 사실이 있다면"Y", 없다면"N",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기록대조일 [출생일~2022.09.22.]**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셔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90일, 연간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단신부임 인정 불가

▣ **특별공급 입주자(당첨자),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를 모두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입주자로 선정),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①번 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 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발표 시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추첨에 불참 시 예비입주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 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 용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2(목)**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양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시 아래 "청약신청 유의사항",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을 확인하시기 바람.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입주자 저축 관련 기준사항

입주자저축 종류	기한	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모집공고 당일** 까지	지역별 / 면적별 기준에 따른 예치기준금액 납입
청약저축	**입주자모집공고 전일** 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 (청약예금으로 전환 후 청약저축으로 재전환 불가)
청약부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 까지	지역별 / 면적별 기준에 따라 납입 85㎡ 초과 주택에 청약 시 청약예금으로 전환
청약예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 까지	지역별 / 면적별 기준에 따라 예치기준금액 납입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
※ 청약저축 → 청약예금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
(단, 청약예금으로 전환 이후 청약저축으로 재전환 불가)
※ 청약부금 → 청약예금 전환 기준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기준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신청 가능.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변경 없이 청약신청 가능)
※ 청약예금 신청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 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①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②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며,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④ 청약 시 기입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당첨자는 청약 시 기입한 정보의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견본주택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민영주택	광양시 /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1순위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이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면적 85㎡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기간에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2]

청약가능 전용면적	거주 지역별 예치금액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광양시 및 전라남도 포함)	그 밖의 광역시 (광주광역시 포함)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구분	내 용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가 속한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함)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전라남도 광양시 민영주택 일반공급 모든 주택형은 100%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양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신청자가 광양시 6개월 미만 거주신청자 및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 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3항에 따라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하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개별조회가 가능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 (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 그때까지) 예비입주자 지위가 인정됩니다. (※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예비입주자 지위기간 동안 사업주체 분양홈페이지 명단 게시)
유의사항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 원(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인 1호 또는 1주택 (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 "소형·저가 주택 등"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 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소형·저가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등 옵션에 대한 가격은 제외)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일을 기준으로 당첨일 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일반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2.(목)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시 발급 유의사항
필수서류	신분증	본인	• 내국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모든 정보가 표기되도록 발급**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모든 정보가 표기되도록 발급(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출입국사실이 있다면 "Y", 없다면 "N",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 **기록대조일[출생일 ~ 2022.09.22.]**
추가서류 (해당자)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단신부임)	본인 및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생업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발급 기준은 상기 본인의 출입국사실증명원 참조하여 발급)
	복무확인서	해당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청약신청 하는 경우 (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기타서류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청약자)	• 용도 : 서류제출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
	위임장	본인(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대리인의 인장(도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2.(목)**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제출)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전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자녀)국내 거주 확인을 위하여 제출 • **출입국 사실이 있다면"Y", 없다면"N",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기록대조일 [출생일~2022.09.22.]**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셔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90일, 연간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단신부임 인정 불가

Ⅳ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방법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노부모부양자	2022.10.04(화) ('청약Home' 인터넷 : 09:00 ~ 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 ~ 14:00)	• 인터넷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견본주택 주소: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91)
일반공급	1순위	2022.10.05(수) 09:00 ~ 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2.10.06.(목) 09:00 ~ 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등에 한하여 견본주택방문접수 (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 ~ 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점 또는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 ~ 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본인이 기재하는 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청약 시]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접속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 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 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 청약신청」⇒「Step2.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 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 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 통장 •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통 (위임 받은 자의 인적사항 기재하여 발급)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서 당일 영업시간 내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Ⅴ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비고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노부모부양자	• 일시 : 2022.10.17.(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2022.10.18.(화)~2022.10.22.(토) [5일간] (10:00~17:00) • 장소 : 본 견본주택 **T:1566-5535**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91 (중동1732-2)	• 2022.10.28.(금)~ 2022.11.02.(수) (6일간) • 장소 : 좌동	※ [코로나-19]로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체 홈페이지 (**www.더샵광양라크포엠.com**)에서 사전 방문예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예약가능 일정은 당첨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임. ※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 입주대상자는 계약체결 기간 전 상기 일정 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준비하시어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예약제 운영예정) ※ 코로나19 및 사업주체 상황에 따라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개별 연락 또는 홈페이지 게시 예정
- 당첨자의 계약 기간은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은 할 수 없습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당첨 및 체결된 계약의 취소 및 해약의 사유가 됩니다.
  ①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②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이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개별조회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10.17.(월) ~ 2022.10.26.(수) [10일간] 조회가능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당첨조회(10일간)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 당첨조회 (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하기 (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10.17.(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 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공급 방법

구분	신청대상자	예비입주자 발표일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노부모부양자	• 일시 : 2022.10.17(월) • 확인방법: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청약 시 입력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개별 연락예정 ※ 청약신청 시 입력한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본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은 예비입주자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할 예정임.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된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일반공급 부적격 당첨된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임.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개별조회가 가능하며, 최초 계약이 가능한 날부터 예비입주자 지위 인정 기간까지 사업주체 분양홈페이지에 공고 예정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청약 당시 입력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와 실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상이한 경우, 사업주체 대표번호 **(1566-55355)**로 연락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중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정당 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세대에 한해 추첨 후 계약이 가능함.
※ 서류제출 기간 및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 추첨을 위해 방문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2(목)** 이후 발행분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 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본인 발급용**
		○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사항 (본인 외 모두 제3자)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견본주택 비치)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 추가(아파트 계약 위임용)
	○		• 대리인 신분증, 인장(또는 대리인 서명)

▣ 구비서류 안내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2.(목)**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예 : 아파트 계약용, 아파트 계약 위임용)
※ 대리인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한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하나은행	161 – 910041 – 87505	교보자산신탁(주)

- 상기 지정계좌로 직접 무통장입금 [당첨 동·호수, 공급신청자(계약자)성명으로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계약 시 지참하여 주십시오.
- 계약금 입금 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분양대금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공급계약 시 동·호수별 가상계좌를 부여(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으로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상기 모계좌 [하나은행 161 - 910041 - 87505, 예금주 : 교보자산신탁(주)] 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수분양자)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매도인(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라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부적격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합니다.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고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여 당첨통장 재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의해 조치됩니다.
  (4)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됩니다.

  ※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또는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신청 시 사용한 주택형(약식)이 아닌, 설계도서상의 주택형으로 표시하여 발행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또는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등에 준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 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확인 제출서류 등을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세대주, 거주기간, 부적격사유 등)
- 코로나19로 인해 계약 체결 전 서류 심사는 방문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국가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작성)
-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대출 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총 분양가격의 60% 범위 내에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입니다.
-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주택형별로 계약금(공급금액의 10%)완납 이후 중도금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사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일시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사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및 적격대출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당 사업지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세대당 2건(기존에 보증 이용건수를 합산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일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실계약자, 외국인, 법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Ⅵ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공사 유의사항

(단위: 원, 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 (10%) 계약 시	잔금 (90%) 입주지정기간
84A	14,500,000	1,450,000	13,050,000
84B	18,100,000	1,810,000	16,290,000
84C	14,100,000	1,410,000	12,690,000
84D	13,500,000	1,350,000	12,150,000
115A	20,000,000	2,000,000	18,000,000
115B	23,800,000	2,380,000	21,420,000
134	27,200,000	2,720,000	24,480,000
137	28,000,000	2,800,000	25,200,000
157	32,300,000	3,230,000	29,070,000
159	34,000,000	3,400,000	30,600,000

▣ 발코니확장공사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하나은행	161 – 910041 – 88105	교보자산신탁(주)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에서는 직접 수납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한 것은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시행 수탁자,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10.02.18. 개정 시행)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안방 발코니 및 다용도실 제외)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발코니 외부에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 등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의 형태, 위치, 규격, 사양, 색상, 열림(개폐)방향 등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선홈통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상층세대 바닥 배관으로 인하여 천장 일부 구간에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은 입주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 준공 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진행 예정이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공사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수납장의 길이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십시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별도계약 –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LG전자)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설치 대수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 계약시(10%)	중도금(10%) 2023.04.17.	잔금(80%) 입주지정일
84A, 84B, 84C, 84D	3대	거실(R-W0600C2SP) + 주방(R-W0230C2SP) + 침실1(R-W0230C2SP)	5,100,000	510,000	510,000	4,080,000
	5대	거실(R-W0600C2SP) + 주방(R-W0230C2SP) + 침실1(R-W0230C2SP) + 침실2(R-W0200C2SP) + 침실3(R-W0200C2SP)	7,600,000	760,000	760,000	6,080,000
115A 115B	3대	거실 (R-W0720C2SP) + 주방 (R-W0320C2SP) + 침실1 (R-W0320C2SP)	5,600,000	560,000	560,000	4,480,000
	7대	거실 (R-W0720C2SP) + 주방 (R-W0320C2SP) + 침실1 (R-W0320C2SP) 침실2 (R-W0200C2SP) + 침실3 (R-W0200C2SP) + 침실4 (R-W0200C2SP) + 알파룸 (R-W0160C2SP)	11,600,000	1,160,000	1,160,000	9,280,000
134, 137	4대	거실 (R-W0520C2SP) + 거실 (R-W0520C2SP) + 주방 (R-W0320C2SP) + 침실1 (R-W0320C2SP)	7,900,000	790,000	790,000	6,320,000
	7대	거실 (R-W0520C2SP) + 거실 (R-W0520C2SP) + 주방 (R-W0320C2SP) 침실1 (R-W0320C2SP) + 침실2 (R-W0200C2SP) + 침실3 (R-W0200C2SP) + 침실4 (R-W0230C2SP)	12,400,000	1,240,000	1,240,000	9,920,000
157, 159	4대	거실 (R-W0520C2SP) + 거실 (R-W0520C2SP) + 주방 (R-W0320C2SP) + 침실1 (R-W0320C2SP)	7,900,000	790,000	790,000	6,320,000
	8대	거실 (R-W0520C2SP) + 거실 (R-W0520C2SP) + 주방 (R-W0320C2SP) + 침실1 (R-W0320C2SP) 침실2 (R-W0200C2SP) + 침실3 (R-W0200C2SP) + 침실4 (R-W0200C2SP) + 침실5 (R-W0320C2SP)	13,800,000	1,380,000	1,380,000	11,04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은 발코니확장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하며, 시공 및 자재 발주 등의 문제로 계약 후 선택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거실 스탠드형 및 안방벽걸이형 에어컨 각1개소 설치 가능하도록 냉매매립배관 연결용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됨. (에어컨장비 및 실외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제공되지 않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는 본 아파트(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실외기실 쪽의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박스,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음.(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냉매매립배관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콘으로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기는 견본주택 전시용품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는 장비 사양 및 위치와는 무관하며 변경 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시 적용되는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에는 공기청정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함.
- 팬트하우스(134,137,157,159 타입)의 경우 전실 옵션 선택 시 실외기 2대가 수직으로 2단 설치되므로 별도 실외기를 추가 설치할 수 없음.

(2) 평면특화 (발코니 확장 시 유상선택 품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타입	규격 / 제품명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10%)	2023.04.17.	입주지정일
프리미엄키친	84A (최상층 제외)	대면형 주방+독립형 식당+주방팬트리+고급형 주방가구+우물천정/간접조명+디자인후드	12,800,000	1,280,000	1,280,000	10,240,000
	84A 최상층	고급형 주방가구 + 디자인후드	10,700,000	1,070,000	1,070,000	8,560,000
	84B (최상층 제외)	독립형 아일랜드장+독립형 식당+고급형 주방가구+우물천정/간접조명+디자인후드	12,000,000	1,200,000	1,200,000	9,600,000
	84B 최상층	고급형 주방가구 + 디자인후드	10,700,000	1,070,000	1,070,000	8,560,000
	84C	고급형 주방가구 + 디자인후드	10,400,000	1,040,000	1,040,000	8,320,000
	84D	고급형 주방가구 + 디자인후드	10,800,000	1,080,000	1,080,000	8,640,000
	115A (최상층 제외)	대면형 주방+고급형 주방가구+우물천정/간접조명+디자인후드 + 3구 인덕션(삼성/LG 택1) + 바이오필릭테라스	16,900,000	1,690,000	1,690,000	13,520,000
		대면형 주방+고급형 주방가구+우물천정/간접조명+디자인후드 + 3구 인덕션(삼성/LG 택1)+ 바이오필릭테라스(소형) +복도팬트리	14,400,000	1,440,000	1,440,000	11,520,000
	115A 최상층	고급형 주방가구 + 디자인후드	11,000,000	1,100,000	1,100,000	8,800,000
	115B	대면형 주방+고급형 주방가구+우물천정/간접조명+디자인후드 + 3구 인덕션(삼성/LG 택1) + 바이오필릭테라스	16,900,000	1,690,000	1,690,000	13,520,000
		대면형 주방+고급형 주방가구+우물천정/간접조명+디자인후드 + 3구 인덕션(삼성/LG 택1) + 바이오필릭테라스(소형) +복도팬트리	14,400,000	1,440,000	1,440,000	11,520,000
	134 / 137	고급형 주방가구 + 디자인후드	10,300,000	1,030,000	1,030,000	8,240,000
	157 / 159	고급형 주방가구 + 디자인후드	13,700,000	1,370,000	1,370,000	10,960,000
알파룸 수납강화	84C / 84D	알파룸 룸인룸 + 복도팬트리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115A / 115B	알파룸 듀얼드레스룸	13,400,000	1,340,000	1,340,000	10,720,000
스타일링바스	84A, B, C, D	공용욕실 건식세면공간 (고급형 수전/ 수납장/ 조명형거울/ 세면대 상판/ 포켓도어/ 벽 판넬), 부부욕실 (고급형 타일/뒷선반/도기/수전/샤워부스)	6,800,000	680,000	680,000	5,440,000
	115A, B	공용욕실 건식세면공간 (고급형 수전/ 수납장/ 조명형거울/ 세면대상판/ 포켓도어/ 벽 판넬), 부부욕실 (고급형 뒷선반/도기/수전/샤워부스)	7,300,000	730,000	730,000	5,840,000

- 스타일링바스 옵션 선택 시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의 스타일링바스 유상옵션은, 건립세대와 형태 및 크기 구성 등이 상이하니, 견본주택 및 분양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스타일링바스 옵션 선택 시 세면대 배수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천정에 설치됩니다. 또한 스타일링바스 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디자인 벽 판넬 나누기 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타일링바스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욕실사이즈, 욕실장의 형태와 구성, 양변기 위치, 욕실 악세사리 설치품목 및 위치, 욕실문 및 세면대의 형태, 바닥마감재(스타일링바스 바닥 : 타일 / 케어룸 바닥 : 강마루)가 변경됩니다.
- 스타일링 바스룸 바닥에는 별도의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케어룸 선택 시 갱의장이 설치되며 욕실과 케어룸 사이 도어는 ABS 여닫이도어, 케어룸과 복도 사이 도어는 목 여닫이도어로 설치됩니다.
- 84A/B, 115A/B 프리미엄키친 옵션 선택 시에만 주방/식당 우물천정과 간접조명(84A, 115A/B의 포인트 천정마감 포함)이 설치됩니다.
- 84A/B/C/D 스타일링바스 미선택 시 공용욕실은 기본형 수전/세면도기/욕실장/뒷선반으로 시공되고 케어룸(갱의장 및 강마루, 벽지 시공)이 설치되며, 부부욕실은 기본형 수전/도기/샤워부스/벽, 바닥 타일/뒷선반이 시공됩니다.
- 115A/B 스타일링바스 미선택 시 공용욕실은 기본형 수전/세면도기/욕실장/뒷선반으로 시공되고 케어룸(갱의장 및 강마루, 벽지 시공)이 설치되며, 부부욕실은 기본형 수전/도기/샤워부스/세면대 상판이 시공됩니다.
- 134/137, 157/159 스타일링바스 미선택 시 욕실별로 기본형 수전/도기/샤워부스/세면대 상판 또는 뒷선반/벽,바닥 타일(욕실2,3에 한함)이 시공되며, 옵션 선택여부에 따른 욕실 평면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 스타일링바스 선택시 스타일링바스 바닥은 지정타일(상담석 확인)로 마감되며, 스타일링바스와 거실부 바닥타일이 중복 선택된 경우, 스타일링바스 바닥타일은 거실부 바닥타일과 동일한 타일로 변경하여 시공됩니다.
- 115A/B 프리미엄키친 + 바이오필릭테라스(小) 옵션 선택 시 바이오필릭테라스 공간이 줄어들고, 복도에 면한 팬트리 공간이 설치됩니다.
- 115A/B 프리미엄키친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바이오필릭테라스 및 바이오필릭테라스(小) 공간에는 수전, 바닥 배수구 및 트랜치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84A 프리미엄키친 및 엔지니어드스톤 옵션 동시 선택 시에만 아일랜드 상부에 바탑(우드마감) 및 측면 석재 내리기 마감이 설치되며, 84C(미건립타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84B 프리미엄키친 및 엔지니어드스톤 옵션 동시 선택 시에만 아일랜드 측면 석재 내리기 마감이 설치되며, 84D(미건립타입)에는 해당되지 않

습니다.

(3)가전제품 (발코니 확장 시 유상선택 품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타입	규격 / 제품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3.04.17.	입주지정일
청정환기시스템 (일반형)	84A, B, C, D	경동나비엔 청정환기 유니트 (200CMH), 메인 컨트롤러(1개)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115A, B, 134, 137, 157, 159	경동나비엔 청정환기 유니트 (300CMH), 메인 컨트롤러(1개)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청정환기시스템 (고급형)	84A, B, C, D	경동나비엔 청정환기 유니트 (200CMH), 각실 컨트롤러(4개)	4,200,000	420,000	420,000	3,360,000
	115A, B	경동나비엔 청정환기 유니트 (300CMH), 각실 컨트롤러 (6개)	5,400,000	540,000	540,000	4,320,000
	134, 137	경동나비엔 청정환기 유니트 (300CMH), 각실 컨트롤러(5개)	5,200,000	520,000	520,000	4,160,000
	157, 159	경동나비엔 청정환기 유니트 (300CMH), 각실 컨트롤러(6개)	5,700,000	570,000	570,000	4,560,000
삼성비스포크	전타입	삼성 비스포크 키친핏 3도어형 (냉장+변온+김치) + 수납장 (냉장: RR40A7(9/8)95AP, 변온: RZ24A5(9/8)G0AP, 김치: RQ34A7(9/8)45AP)	6,000,000	600,000	600,000	4,800,000
LG 오브제	전타입	LG오브제 (냉장+냉동+김치) + 수납장 (냉장: BC1L1AA1(STS), 냉동: BC1F1AA(STS), 김치: BC1K1AA1(STS))	5,700,000	570,000	570,000	4,560,000
빌트인김치 냉장고	84A, B, C, D 115A, 115B	LG 빌트인 김치냉장고(K221PR14BL1/R1) + 냉장고 설치공간 + 수납장	2,050,000	205,000	205,000	1,640,000
		삼성 빌트인 김치냉장고(RQ22K5L(R)01EC) + 냉장고 설치공간 + 수납장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134, 137	LG 빌트인 김치냉장고(K221PR14BL1/R1) + 냉장고 설치공간 + 수납장	1,850,000	185,000	185,000	1,480,000
		삼성 빌트인 김치냉장고(RQ22K5L(R)01EC) + 냉장고 설치공간 + 수납장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157, 159	LG 빌트인 김치냉장고(K221PR14BL1/R1) + 냉장고 설치공간 + 수납장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삼성 빌트인 김치냉장고(RQ22K5L(R)01EC) + 냉장고 설치공간 + 수납장	1,750,000	175,000	175,000	1,400,000
전기오븐	전타입	SK매직 (EON-B450M)	350,000	35,000	35,000	280,000
빌트인인덕션	전타입	LG 3구 인덕션 (BEI3GTBI)	1,250,000	125,000	125,000	1,000,000
		삼성 3구 인덕션 (NZ63R6707MR)	1,250,000	125,000	125,000	1,000,000
빌트인식기 세척기	전타입	LG (DUB22SB)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삼성 (DW60T7075FS)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음식물분쇄 처리기	전타입	지비앤디 (Gb-200)	750,000	75,000	75,000	600,000
스마트홈 앤 시큐리티	84A, B, C, D 115A, B	13인치 월패드 + 안면인식 도어폰 + 지문인식도어락 + 무선욕실스위치	900,000	90,000	90,000	720,000
	134, 137, 157, 159	13인치 월패드 + 안면인식 도어폰 + 지문인식도어락 + 무선욕실스위치	950,000	95,000	95,000	760,000
전동커튼	84A, B, C, D 115A, B	전동커튼레일 (거실, 안방 각 1개소)	1,350,000	135,000	135,000	1,080,000
	134, 137, 157, 159	전동커튼레일 (거실2개소, 침실1, 침실4 각 1개소)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 가전제품 옵션은 세대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고, 가전 및 가구도어의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정환기시스템 선택 시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은 시공되지 않으며,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의 비용은 상기 추가선택품목 판매가 산정 시 감액되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청정환기시스템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환기장치가 설치됩니다.
- 청정환기시스템 일반형(스탠다드)의 경우 실내공기질측정(AIG) 장치는 이동형(포터블) 타입의 제품이 세대당 1개가 제공되며, 주방에 4.3인치 Color LCD 컨트롤러가 설치됩니다.
- 청정환기시스템의 설치 위치는 타입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정환기시스템은 기본형 환기장치 대비 큰 용량의 제품으로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정환기시스템의 필터교체는 사용시점 기준으로 연 1회 권장해드립니다.
- 청정환기시스템의 작동을 위한 통합 컨트롤러는 주방에 노출 시공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청정환기시스템은 위치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청정환기시스템 고급형(프리미엄)의 경우 제어실별로 4.3인치 실내공기질측정(AIG) 일체형 Color LCD 컨트롤러가 설치되며, 주방에 4.3인치 실내공기질측정(AIG) 일체형 Color LCD 통합 컨트롤러가 설치됩니다.
- 빌트인 냉장고 유상옵션(비스포크, 오브제)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 도어의 컬러는 준공 전 원하시는 컬러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조사에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엘지전자 오브제 선택 시 컬러선택은 불가합니다.
- 빌트인 냉장고(비스포크, 오브제) 선택 시 타입에 따라 가전 배치 순서(비스포크:냉장, 변온, 김치냉장고 / 오브제 :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및 가전, 가구의 열림 방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비스포크, 오브제) 선택 시 주방가구의 형태 및 크기, 수납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비스포크, 오브제) 또는 빌트인김치냉장고 미선택시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가구가 설치되며 도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빌트인 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냉장고 공간이 1개소 제공되며(견본주택은 빌트인 냉장고로 전시함),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여닫이도어가 설치됩니다.
- 음식물분쇄처리기 옵션 선택 시 온수분배기와의 간섭으로 싱크볼의 배수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음식물분쇄처리기 옵션 선택 시 제품 설치위치와 싱크대 배수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식물분쇄처리기 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음식물탈수기는 제공되지 않으며, 싱크대 하부 가림막 길이가 변경됩니다.
- 음식물 분쇄 처리기 배출구의 배출고무는 성능유지 차원에서 년 1회 교환하여야 합니다. 제품별 소모성 교환 품목은 선택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덕션을 유상옵션으로 선택한 경우 기본 가스쿡탑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스마트홈앤시큐리티 옵션 미선택 시 10인치월패드, 기구식 욕실스위치, 푸시풀 도어락(지문인식기능 제외), 기본 도어폰(안면인식기능 제외)이 기본 제공됩니다.
- 스마트홈앤시큐리티 옵션선택 시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 대신 13인치월패드, 환기 연동되는 무선IoT 욕실스위치, 지문인식 푸시풀도어락, 안면인식 도어폰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 스마트홈앤시큐리티 옵션 상품의 설치 위치는 타입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13인치 월패드에서 제공되는 추가 컨텐츠서비스는 신규서비스 개발 및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펜트하우스(134,137,157,159형)의 경우 전실 옵션 선택 시 실외기 2대가 수직으로 2단 설치되므로 별도 실외기를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오브제 선택 시 측면 톨장(폭이 줄어듬) 내부에는 인출형 금속 선반이 설치되지 않으며, 기본 목선반이 설치됩니다.
- 프리미엄키친 옵션 선택 시 기본형 주방과 가스쿡탑 위치가 상이합니다.
- 115A/B타입에 한하여 프리미엄키친 옵션 선택 시 인덕션 쿡탑 설치가 포함되며 가스쿡탑 설치가 불가합니다.
- 84A/B/C/D 및 134/137, 157/159타입의 경우, 인덕션 쿡탑은 별도 옵션으로 프리미엄키친 옵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인테리어 옵션 선택에 따라 용도가 변경되는 실에는 청정환기시스템 프리미엄 선택 시에도 4.3인치 실내공기질측정 겸용 일체형 Color LCD 컨트롤러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전기오븐 미선택시 하부장 여닫이 도어가 설치됩니다.
- 전동커튼 유상옵션 선택 시 커튼구동기, 커튼레일, 리모컨이 제공되며, 커튼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4) 가구 및 마감재 (발코니 확장 시 유상선택 품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타입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3.04.17.	입주지정일
현관중문	전타입	1픽스+2연동 슬라이딩도어 + 신발장 하부조명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포슬린타일 (거실/주방/복도 바닥)	84A (최상층 제외)	600X600 포슬린타일 바닥마감 (기본형)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600X600 포슬린타일 바닥마감 (프리미엄키친)	2,050,000	205,000	205,000	1,640,000
	84A 최상층	600X600 포슬린타일 바닥마감 (기본형/프리미엄키친)	2,050,000	205,000	205,000	1,640,000
	84B (최상층 제외)	600X600 포슬린타일 바닥마감 (기본형)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600X600 포슬린타일 바닥마감 (프리미엄키친)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84B 최상층	600X600 포슬린타일 바닥마감 (기본형/프리미엄키친)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84C (최상층 제외)	600X600 포슬린타일 바닥마감 (기본형/프리미엄키친)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84C 최상층	600X600 포슬린타일 바닥마감 (기본형/프리미엄키친)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84D (최상층 제외)	600X600 포슬린타일 바닥마감 (기본형/프리미엄키친)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84D 최상층	600X600 포슬린타일 바닥마감 (기본형/프리미엄키친)	1,850,000	185,000	185,000	1,480,000
	115A (최상층 제외)	600X600 포슬린타일 바닥마감 (기본형/프리미엄키친)	2,450,000	245,000	245,000	1,960,000
	115A 최상층	600X600 포슬린타일 바닥마감 (기본형/프리미엄키친)	2,750,000	275,000	275,000	2,200,000
	115B	600X600 포슬린타일 바닥마감 (기본형/프리미엄키친)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134 / 137	600X600 포슬린타일 바닥마감 (기본형/프리미엄키친)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157 / 159	600X600 포슬린타일 바닥마감 (기본형/프리미엄키친)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디자인월	84A	거실 아트월 대형타일(600X1200) + 아트월 상부 간접조명 + 거실후면/복도벽 판넬 및 픽쳐레일	2,350,000	235,000	235,000	1,880,000
	84B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84C		2,650,000	265,000	265,000	2,120,000
	84D		2,150,000	215,000	215,000	1,720,000
	115A / 115B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134 / 137		2,850,000	285,000	285,000	2,280,000
	157 / 159		3,250,000	325,000	325,000	2,600,000
주방엔지니어드스톤 (주방 벽/상판)	84A (최상층 제외)	기본형 (현대L&C / MO626 앰브로셜누보)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프리미엄키친 (현대L&C / MO626 앰브로셜누보)	3,200,000	320,000	320,000	2,560,000
	84A 최상층	기본형 / 프리미엄키친 (현대L&C / MO626 앰브로셜누보)	4,800,000	480,000	480,000	3,840,000
	84B (최상층 제외)	기본형 (LG / ND103 토르)	3,600,000	360,000	360,000	2,880,000
		프리미엄키친 (LG / ND103 토르)	3,850,000	385,000	385,000	3,080,000
	84B 최상층	기본형 / 프리미엄키친 (LG / ND103 토르)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84C	기본형 (현대L&C / MO626 앰브로셜누보)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프리미엄키친 (현대L&C / MO626 앰브로셜누보)	4,700,000	470,000	470,000	3,760,000
	84D	기본형 (LG / ND103 토르)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프리미엄키친 (LG / ND103 토르)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115A (최상층 제외)	기본형 (LG / LU103 스털링실버)	4,700,000	470,000	470,000	3,760,000
		프리미엄키친 (LG / LU103 스털링실버)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115A 최상층	기본형 (LG / LU103 스털링실버)	4,550,000	455,000	455,000	3,640,000
		프리미엄키친 (LG / LU103 스털링실버)	5,000,000	500,000	500,000	4,000,000
	115B	기본형 (LG / LU103 스털링실버)	6,150,000	615,000	615,000	4,920,000
		프리미엄키친 (LG / LU103 스털링실버)	4,050,000	405,000	405,000	3,240,000
	134 / 137	기본형 (LG / LU103 스털링실버)	4,200,000	420,000	420,000	3,360,000
		프리미엄키친 (LG / LU103 스털링실버)	4,900,000	490,000	490,000	3,920,000
	157 / 159	기본형 (LG / LU103 스털링실버)	2,750,000	275,000	275,000	2,200,000
		프리미엄키친 (LG / LU103 스털링실버)	3,250,000	325,000	325,000	2,600,000
안방 붙박이장 (스탠다드형)	84A, C, D	유리도어 슬라이딩장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115A		2,950,000	295,000	295,000	2,360,000
안방 붙박이장 (프리미엄형)	84A, B, C, D	AL 슬라이딩도어 + 고급형 시스템가구(벽판넬/선반)	6,600,000	660,000	660,000	5,280,000
	115A, B		7,550,000	755,000	755,000	6,040,000
자녀방 붙박이장 (침실3)	84A, B, D, 115A, B 134, 137, 157, 159	자녀방 붙박이장	1,350,000	135,000	135,000	1,080,000
	84C	자녀방 붙박이장	1,050,000	105,000	105,000	840,000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84A, B, C, D	거실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 침실 1,2,3 감성조명 (알파룸 감성조명 미포함)	2,450,000	245,000	245,000	1,960,000
	115A, B	거실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 침실 1,2,3 감성조명 (알파룸 및 침실4 감성조명 미포함)	2,850,000	285,000	285,000	2,280,000
	134 / 137	거실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 침실 1,2,3,4 감성조명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157 / 159	거실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 침실 1,2,3,4,5 감성조명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상판 및 벽체)은 자재 특성상 시공이음매가 노출되며, 나누기 도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상판 및 벽체) 미선택 시, 인조대리석(MMA) 주방 상판과 주방벽체 타일마감이 적용되며 상판과 타일이 접하는 부분에는 뒷턱 또는 뒷선반이 설치됩니다. 기본형/유상옵션형 선택 여부에 따라 주방 상판 전면 두께(다용도실 가구 상판 참조) 및 주방가구 규격 등이 변경됩니다.
- 중문(현관중문, 거실/복도 유리슬라이딩도어)은 설치 주택형 및 타입에 따라 색상 및 형태, 길이 등이 상이하게 설치되며, 현관중문 선택여부에 따라 현관창고 및 신발장의 형태, 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 시 중문의 프레임, 창호 부속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관중

문 선택 시 신발장 하부 간접조명이 적용되며, 신발장하부 간접조명 ON/OFF를 위한 동작감지센서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중문(현관중문, 거실/복도 유리슬라이딩도어)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도어 개폐 시 흔들림,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와 현관중문의 틈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실/주방 바닥타일 선택 시, 타일 패턴 및 칼라는 생산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타일 나누기 도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닥타일의 적용 범위는 주택형 및 타입에 따라 상이하게 설치되니,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거실/주방 바닥타일 자재 특성상 표면이 평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는 K.S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주방 상판 및 벽체 엔지니어드스톤 미선택 시 아일랜드 측면은 가구로 마감됩니다.
- 주방 상판 및 벽체 엔지니어드스톤 선택 시 84A/B 타입에 한하여 아일랜드 측면이 엔지니어드스톤으로 마감되며, 84C/D, 115A/B, 134/137, 157/159타입의 아일랜드 측면은 가구로 마감됩니다.
- 디자인월 선택 시 마감재 및 시공 두께로 인하여 거실 및 복도 공간의 치수가 줄어듭니다.
- 안방붙박이장 스텐다드형과 프리미엄형(견본주택 설치)의 형태 및 구성, 가구 깊이, 마감재 색상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및 분양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월 옵션 선택 시에만 거실후면 및 복도에 픽쳐레일이 설치되며, 사용 시 과중한 하중으로 인해 픽쳐레일이 파손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방붙박이장 프리미엄형 선택 시, 일반 붙박이장 대비 옷걸이 사용성을 고려한 깊이를 추가로 확보하므로 안방 폭 및 파우더 복도 공간의 다소 줄어듭니다.
- 115A/B 듀얼드레스룸 옵션 선택 시 안방 도어 위치가 변경되며, 알파룸 및 기존 안방 도어 위치에는 목공틀이 설치됩니다.
-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유상옵션 선택 시 거실등, 침실등의 색온도와 밝기가 제어되고, 거실 우물천정에 간접 LED조명(점·소등 제어)이 적용됩니다. (알파룸 및 일부침실은 감성조명 옵션 제외, 옵션계약안내문 참조)
- 거실감성조명은 월패드 및 거실스위치, 침실감성조명은 통합스위치에서 제어되며, 더샵 전용 스마트폰 App. 및 음성인식으로도 제어 가능합니다. (단, 음성인식 제어 기능은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거실,주방 아트월면 상부 LED 간접조명 및 주방 우물천정 간접조명은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옵션과는 별도 옵션입니다.

▣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납부 조건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 시	중도금	입주지정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 계좌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 (80%)	우리은행	1005-804-395533	㈜포스코건설

- 추가 선택품목은 각 품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주택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선택하여 주십시오.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여 주십시오.
- 상기 계좌로 납부 후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을 계약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수표, 신용카드로는 수납하실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추가 선택품목 약정금액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수분양자)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이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한 것은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관련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유상옵션 선택품목을 보여드리기 위해 타입별로 상이한 브랜드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브랜드 제품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 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 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Ⅶ 입주예정일 및 관련절차

▣ 입주예정월 : 2025년 11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음.
- 입주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함.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될 수 있으며,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하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관련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 제27호
- 입주자의 입주개시 1~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 입주 45일 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입주자 현장 도착 ⇒ ③접수, 교육 안내 ⇒ ④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 전 보수 ⇒ ⑦ 보수 여부 확인 및 추가 보완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입주예정월 : **2025년 11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루 개별 통보키로 함.)
-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차장 출입 가능한 제한 높이(차로부분) : 지하3층 2.7m / 지하2층 2.3m / 지하1층 2.7m 이하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됨.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Ⅷ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 아래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을 따름.

구분	내용
일반사항 (공통)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주택형 신청 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 및 지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정산이 필요한 면적증감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으로 계산하여 잔금납부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하며,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 하였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주차장 등의 시설을 구조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은 불가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을 지연될 수 있으며,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전체 택지지구 택지준공과 연동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 (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보증도시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주변 현황 및 현정 여건, 주변 개별,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 작성)
인허가	• 현장여건, 시공상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정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동표시, 동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은 2021년 건축심의를 신청한 사업으로,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의 창호, 벽체의 단열기준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18.09.01)' 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 지자체, 인·허가관청 등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경우 인접대지, 학교부지 등의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세대 내부 및 외부 공용부위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인·허가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공동주택(오피스텔)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반층상태 및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양광고물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십시오. • 분양대상물의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이 삽입된 분양 관련 각종 홍보물(팜플렛, 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교육시설, 주변 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이나 개발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 환경,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VR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셔야 합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신 후에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도 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도서와 모형, CG 등 분양광고물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시공은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통합로비 이미지컷에 표현된 일체의 가구 및 장식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사업주체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는 84A, 84B, 115A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에 제공되는 주택형 84A, 84B, 84C, 84D, 115A, 115B 타입의 가상VR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치수 및 마감재 색상, 설치 제품의 크기, 창호 외부에 보이는 전경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 4A, 84B, 115A 타입 외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 84C, 84D, 115B, 134 137, 157, 159 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옵션의 형태 등은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식재, 경관연출 등)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사 현장여건에 따라 차·보도 포장, 식재, 시설물의 마감 재질, 디자인, 선형, 위치, 규모, 색채, 거리, 폭을 포함하여 주변 환경과 부지 내 계획고변경에 따른 고저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의 마감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에는 인·허가청에 제출된 마감재리스트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추가선택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견본주택 내 안방 비확장 발코니에 설치된 바닥마감재 및 가구, 소품 등은 연출용으로 설치된 전시용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공되지 않으며 안방발코니는 물쓰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바닥 배수구 및 타일마감(실외기실 바닥마감과 동일한 바닥타일)이 기본설치 됩니다. 또한 발코니는 단열 및 바닥 난방이 제공되지 않는 공간이며, 안방과 발코니 사이에는 본 공사 시 분합문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VR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 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환기디퓨져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구분	내용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소방 설비로 실제와 위치/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환기구(DA),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등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침실 벽체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냉방전용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 추가선택품목으로 제공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온도 조절기,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 사양은 동등 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조명기구/스마트 스위치/분전함의 설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본 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된 건조기는 전기식으로, 가스식 건조기 설치를 위한 연도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스식 설치 불가) ※ 건조기는 전시를 위한 것으로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된 가스 배관 위치는 본 공사 시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주방가구 상부장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스마트홈 기능 홍보 및 구현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모형의 경관 조명은 연출된 것으로 실시공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기본형 주방과 욕실은 프리미엄키친 및 스타일링바스 미선택시 설치되는 가구마감재, 후드 등의 샘플을 보여주기 위하여 설치 되었으며, 실제 프로젝트에 설치되는 주방 및 욕실의 형태와 상이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류(시스템가구 포함)의 바디 및 도어 마감재 (도장, PET, LPM, 유리 등)는 본 공사 시 동등이상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입지환경 (학교, 도로, 기반시설, 유해시설 등)	• 본 아파트 내에는「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영유아보육법」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광양시 체결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당해지구 내 학생배치 계획은 개발계획의 변경, 학생 수용 여건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동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광양시 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 변경 시까지 광양중앙초등학교에 배치 가능하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학여건 확보를 위하여 통학로 해당도로에 속도저감 대책 및 보행신호 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입주 후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한 공사소음, 분진, 생활여건 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변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시설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혐오시설, 냄새유발시설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에 의한 차량 및 보행자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문주, 식재, 주변도로 가로등, 야간조명, 옥탑 장식물, 경관조명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보행자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기반시설(가로수, 도로, 공원, 녹지 등) 시공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므로,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 기반시설(도로, 공원, 완충녹지 등) 및 이와 연계된 단지 내 동선(산책로 등)은 추후 기반시설 계획변경이나 인·허가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위치 및 폭, 선형 등이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 인근의 신설·확장도로 계획은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곽 보행자도로의 일부구간이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사면경사/단차구조물(옹벽 등)이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 전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묘, 축사, 발전소, 쓰레기처리장 등이 유해시설이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여 주십시오. • 계약(예정)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 (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이로 인해 빛공해,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의 경우 지상1층, 지하1층 통합로비를 적용하였으며, 그 중 일부 동은 통합로비 지상1층과 지하1층이 공간적으로 연계되도록 보이드 공간 및 계단을 계획하였으며, 각 동마다 컨디션이 달라 보이드 공간에 계단이 미적용된 동도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07동의 경우 지하주차장 계획 관계로 통합로비가 지상1층에만 단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109동은 주동 형태 상 각 코어별 개별출입구로 계획되어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단지 내외부 대지 레벨차이로 인해 설치되는 옹벽으로 인하여 조망권 및 일조권이 불리하므로 이점 참고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동측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해당 도로레벨이 단지레벨보다 높아 일부 세대에 자동차 헤드라이트 빛공해 및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앵커형 영구옹벽 설치로 인한 부지와 영구점용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곽의 건축옹벽, 토목옹벽, 보강토옹벽, 돌쌓기벽(조경석 쌓기 포함) 등은 그 위치 및 형태는 준공접수 및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주변여건(도로현황, 레벨현황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부대 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은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독서실 등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동 공용부 엘리베이터 홀의 지하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1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기준층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으로 시공되며, 마감재의 품절, 품귀 시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및 인쇄제작물에 표현된 통합로비 이미지컷은 101동에 적용된 예시이며, 각 동별로 출입 로비 환경이 상이(로비 상하부층 바닥 오프닝 유무, 적용 층수, 별도 계단 유무 등) 합니다. • 통합로비는 101동~108동에 적용되어 있으며 (107동은 1개층 통합로비 적용, 이외에는 2개층 통합로비 적용), 109동은 개별로비(1개층 적용, 일반 아파트 출입구보다 넓은 로비 제공)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창호의 크기 및 위치, 기능,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내외부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설계상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사용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각 시설별 해당 부대복리시설의 면적은 각 해당 시설의 기타공용면적에 분배되어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재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한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후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됩니다. • 본 아파트 내에는「주택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센터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주택법」제35조제1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 및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시장이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단, ①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및 주동계획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단위실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 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확인 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 도서 작업)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등은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본 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법정인 규정 내에서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계법령에 따른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체결 이후에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과 가감속 차로차선은 준공 후 도로법에 따라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 도로점용허가로 인해 발생한 권리 및 의무 승계신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여야하고, 도로점용허가를 승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외곽 보행자도로의 일부구간이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경사가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계약 전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이 침해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또는 향후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일조량의 감소,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재활용 분리수거 공간, 음식물쓰레기처리, 재활용 창고 , 자전거보관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 및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하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부 문주 계획으로 인접 동의 저층세대에 조망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배치 상 일부동의 저층세대 및 특정세대는 일조권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단지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하부에 휘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이 위치하여 사용에 따른 소음, 진동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냉난방 및 환기시스템 실외기가 각 시설의 옥상 및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향후 입점 업종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열기,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세대 및 각 동의 저층부 인접세대는 필로티 및 중앙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입주민에 의한 소음 및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서는 단지 내 야간조명 효과, 야간 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탑라이트, 근린생활시설,

구분	내용
	관리사무소, 쓰레기 및 재활용보관소, 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 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 및 재활용보관소는 동 당 1개소가 계획 되어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세대 위치 및 주동 출입구의 위치에 따라 이동거리가 상이할 수 있고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필로티 및 저층 인접세대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시선간섭 등의 사생활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세대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수와 조경시설은 입체적 단지 조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장 등에 따라 수정 및 식재 위치,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부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될 수 있으며,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와 외부는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조경석, 석축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 등의 설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옹벽 및 석축 등 단차구간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추후 인·허가 관청의 의견, 미관, 디자인,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의 공동의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해 변경하지 않습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조경 공간에 D/A (설비 환기구) 의 노출이 있어 보행 공간에 인접한 경우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 시설이 설치되며 입주 이후 관리 소홀로 인한 오염수, 해충 및 미생물의 발생, 개구리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공간 및 조경 시설물 내 취사 등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옥외 공간(물놀이장, 수경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은 입주자 에게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맘스라운지, 수경시설 및 외부 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설치예정 위치를 카탈로그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및 파고라, 티하우스 등의 조경 시설물의 크기, 형태는 추후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변형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 상의 조경공간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창호형태, 난간종류, 조경, 고층아파트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강기를 사용하여 이사하셔야 합니다.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담장)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의 고저차로 인해 동별로 진입도선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단지모형 및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는 시공 시 및 소방준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구간은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등)의 통행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의 보행 시 경사도에 따라 보행의 지장과 미끄러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외부에 계획된 전용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 정차 공간 및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부위에는 식재 및 차폐 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등급 (Ⅶ-0.204g)입니다. • 아파트를 포함한 본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 명칭,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동 표시, 동 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 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 내부에는 석재, 석재뿜칠, 도장 등이 혼용되어 시공됩니다. • 우편물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 택배함의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발코니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계단실 및 승강기 홀 공용부 창의 경우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공용부 창호의 제작사 및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의 높이와 형태는 고도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측별 로고의 위치 및 개소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 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동 및 외부 시설의 외관/색채 등의 공용부 설계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개인 취향에 따라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야간 경관조명은 101동(팬트하우스 라인 코어), 108동, 109동에 설치되며, 측벽(측면)조명은 101동, 108동에 설치되며, 조명 설치 위치, 개소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동 3층 이하 외벽, 각종 커뮤니티 시설 외벽은 천연석재 마감(주동 코어는 수성페인트)이며, 기타 외부 노출 구간은 위치

구분	내용
	에 따라 천연석재, 석재뿜칠, 석재타일, 보강토 옹벽 등 마감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석가산, 물놀이장 등)이 설치되며 입주 이후 입주자의 부담으로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오염수, 미생물 발생, 해충, 개구리 등의 소음 등에 대하야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는 근린생활시설 좌측 외부(지하3층)와 근린생활시설 우측후면 선큰(지하2)내에 설치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 본 단지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시설로서 아파트의 주차장은 1,382대로 구성되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7대로 별도 계획입니다. •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주차장에 설치(급속 15대, 완속 23대, 총38대)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추후 달라질 수 있으며,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주출입구]에 위치하여, 인근 저층 세대는 진입램프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차로의 높이는 2.7m로,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지상의 비상차로 등을 이용하여 각 동별 접근이 이뤄지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1, 3층의 주차장 주출입구는 법적기준에 따라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7M 이하의 택배차량이 각 동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지하 2층은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여건에 따라 일부 경우 주차 후 해당 동의 승강기 홀 접근의 이동거리가 멀거나 증가, 해당 동의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며,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계약 전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설계여건에 따라 주차장 내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며, 일부 주차면은 기둥과 간섭으로 운전석 및 보조석 승하차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과 아파트 승강기 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지하출입구 편의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대수 및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우수조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 및 장비의 가동으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우기 등의 기상요건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바닥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 부위 마감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차장 바닥마감은 설계에 배수 구배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 외벽과 주차구획의 이격으로 인해 일부 주차통로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천장)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배수시설, 저수조, 빗물저수조, 기전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2동 후면 및 103동 전면에는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주차장 램프가 설치되어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및 불빛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공간은 택배차량 주차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세대 창고 설치를 위한 공간은 지하층 PIT 내에 세대 창고 설치를 위한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며, 개별 세대 창고의 설치 및 운영방식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자체 운영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습기에 약한 제품은 지하실 특성상 다습한 환경으로 변형이 올 수 있으니 되도록 지양하시기 바람.
세대 평면, 가구 및 마감재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 84C타입은 건립세대인 84A타입과 미건립세대 84D타입은 건립세대인 84B타입과 미건립세대 115B, 134, 157타입은 건립세대 115A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구성, 가구길이, 가구 색상의 조합, 유상옵션의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분양 카달로그 등)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아파트 단위세대의 천장고는 2,300mm(침실 기준)이며, 욕실,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의 부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세대는 확장세대 대비하여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 제공 량이 상이하므로 카탈로그 상 이미지를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유상옵션[프리미엄키친, 빌트인가전+톨장, 전기오븐, 자녀방 붙박이장, 식기세척기, 수납강화, 루미나 감성조명, 음식물분쇄처리기 등]을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만 시공됩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 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며, 각 동별 계단실, 승강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 주십시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구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관련 법규에 따라 물건의 적재가 금지됩니다. •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로 실외기 및 전열교환기 외 피난 동선에 방해가 되는 다른 물품을 적재하실 수 없습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누수 방지를 위해 바닥 마감보다 돌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보안 기능이 있어 개폐 시 해당세대와 하부세대에 경보 및 월패드에 연동되며 하부세대에서는 바로 위 세대의 피난구를 열 수 없습니다. • 세대내 하향식 피난구는 필로티 상부세대를 포함한 최하층에는 설치되지 않으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 증감 시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 세대 내 하향식 피난구는 필로티 상부세대를 포함한 최하층 에는 설치되지 않으나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증감 시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용도실 내 세탁기 설치공간은 가로 90cm, 세로 90cm규격으로 확보하여 해당 규격 이하의 세탁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일부 타입의 경우 세탁기 설치 시 세탁기 용량에 따라 다용도실 도어를 탈거해야 합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다용도실/실외기실/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허용범위 이내의 오차는 하자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 욕실 출입문(부분/공용)은 본 공사 시PVC계통 (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칼리성 세재와 쉽게 화학 반응하여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해당 변색은 하자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복도 또는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마루자재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인쇄물의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아닙니다. • 현관 디딤판/걸레받이, 욕실 뒷선반, 주방 상판 및 벽체 등에 사용된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패턴, 색상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나누기가 다를 수 있으며, 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패턴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과 인조대리석, LPM판넬 등은 자재특성상 본 공사 시 이음매가 보일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패턴 및 색상 등이 견본주택 설치세대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함 두께(주방벽 타일/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 아트월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본 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 코킹 두께 및 색상 등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벽, 측별, 세대간벽은 발코니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 •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커튼박스 길이는 천장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사 시 욕실 천장에 급수급탕분배기와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할 예정이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공사 시 거실/복도 천장 또는 욕실 전실 천장 등에 상부세대 배관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위실 금속도어(현관 방화문) 및 목창호, PL창호의 문짝,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가구류(시스템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가구디테일 및 이음매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며 냉장고 뒤쪽 벽체는 벽지로 마감됩니다. • 침실 내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방의 스위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실 내부에 적용되는 가구의 패턴글라스는 유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실 목문 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시 불가피 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현관 방화문은 성능에 따라 형태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기본제공 품목의 가전, 마감자재 등은 제품 생산 중단 등으로 인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노출되지 않는 부위는 별도 마감이 되지 않습니다.(벽돌, 콘크리트 마감) • 주방벽 및 욕실 바닥/벽 ,발코니 바닥타일 은 입주자 동의 없이 시공줄눈 위치변경 가능 합니다.(재료 및 크기는 동일)
창호	• 외부 창호의 프레임, 색상, 형태, 개구부의 크기, 하드웨어, 유리 사양 등은 성능개선, 안정성 검토에 따라 공소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및 제조사는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창호 프레임 접합 등에 따라 실내에서 프레임 사이에 줄눈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단위실 외측 창호에 방충망이 설치되며, 내측(분합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침실창 중 일부는 관계 법령 및 심의 조치에 따라 비상 시 소방관 진입창으로 이용되고, 소방관 진입창 표시 스티커가 부착되며,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관 진입창은 법적 기준에 따라 24mm 이하 복층유리로 설치되며, 이로 인해 세대 내 단열 및 결로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거실 및 안방 발코니 외부창호는 철제난간이 설치되며, 형태, 색상, 높이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시 확장부분의 외부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등)이 변경될

구분	내용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락방의 창호 사이즈는 다락방 단열재 설치 방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용 기계전기설비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본 공사 시 위치 및 개소(부지 내, 외부 유출입구 등)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우수처리시설, 제습장치, 냉난방기,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모든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 등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지상 구조물(환기/제연용 DA, 탑라이트, 발전기 연도, 천창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하여 인근 호실에 시선 간섭,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기,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 시 효율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임의사용에 의한 파손의 복구비용은 원인자부담의 원칙 따릅니다.)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인접한 침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사용 시 일부 시간대 및 이사 세대로 인한 혼잡 및 대기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승강기의 속도, 인승, 설치수량은 각 동의 층수 및 세대수에 따라 상이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최상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상 혹은 외부 벽면, 지상 일부구간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측격뢰, 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진동 및 소음,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측벽에 낙뢰 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동 옥상 및 지상, 지하층 일부 구간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TV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옥상 층에 설치되며,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태양광발전설비는 106kw가 설치 될 예정이며, 설치위치는 박공지붕 상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신재생에너지는 공용부 전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 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 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하부 세대 중 상부 옥상에 면한 세대는 옥상배수로 인한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방내진 법규」에 따라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PD, AD 등 사프트 벽 내부에는 미장/도장 등의 마감을 하지 않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등 부대 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설계변경을 통해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 커버 등 설치물의 디자인 및 사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상 발전기는 관련 법규상 일정 주기로 시험 운전을 하게 되어 있으며, 운전 시 운전에 따른 소음, 배기가스,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의 실외기는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 기계전기설비	• 환기장치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정환기유니트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환기장치에 미디움 필터가 설치되며,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필터교체주기(연2회 이상 교체 권장)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제품 선정전에 확인하여 주십시오.(실외기를 2대 이상 설치 시 전기 용량이나 환기량 부족에 기인한 장비 소손 등이 발생) 단, 펜트하우스(134,137,157,159형)의 경우 전실 옵션 선택 시 단상 전원 실외기 2대 공급됩니다. • 거실, 침실에 적용되는 냉매배관은 에어컨의 연결 및 유지보수를 위한 커버가 시공됩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 및 덕트는 노출 시공(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여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창의 손잡이의 방향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실외기실 공간 면적이 상이하므로 입주 후 사용 예정인 실외기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실외기 설치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어 확인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루버에는 방충망이 설치되며, 실외기 성능확보를 위해서는 입주민의 주기적인 관리와 청소가 필요 합니다. • 실외기실 내에는 실외기 외 성능에 방해가 되는 다른 어떠한 적재물도 없어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 디퓨저는 본 공사 시 위치와 개소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기본형 환기장치 작동을 위한 컨트롤러는 주방 스위치 상부에 설치 예정이며, 본 공사 시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환기장치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환기장치의 설치위치 및 환기디퓨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환기장치는 본 공사 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덕트가 설치됩니다. (덕트 노출을 가리기 위해 해당타입 침실 커튼박스 길이 및 폭이 변경될 수 있음) • 옵션 선택에 따라 난방 온도조절기가 삭제될 수 있으며, 거실 또는 인근 침실과 연동되어 작동 됩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및 음식 탈수기, 옵션에 따른 추가 장비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거실 스탠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 가능하도록 냉매매립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됩니다.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되며,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 됩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 내부에 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됩니다. • 본 공사 시 단위실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 평형 욕실 내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다락 공간에는 난방 및 냉방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렌지후드 상부 장에는 천장내부에 설치된 휀(FAN) 점검구와 자동식소화기 장치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렌지후드 주변 천장에 분리형 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작동 시 다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설계도면 또는 견본주택에 따라 시공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배수 드레인, 선홈통, 각종 배관 등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유지 관리를 위해 점검구 수량이 추가되거나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 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천장, 실외기실 천장 또는 발코니 천장에 환기 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점검을 위해 장비와 덕트가 노출되거나 확장형 다용도실인 경우는 천장마감 및 점검구가 설치되어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및 다용도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다용도실 천장 마감은 석고보드 위 도장마감이나 향후 SMC 천장판으로 마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락방이 포함된 복층구조의 최상층 세대의 경우 다락방이 있는 해당 층에는 냉·난방, 환기설비 등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침실 내부(시야에 노출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공사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체 감지기는 1, 2층(필로티 포함) 및 최상층에만 설치되며, 배터리 교환 주기는 통상 1년이며, 사용 요건에 따라 교환 주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통신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거실에는 전기/통신 통합형 수구가 설치되며,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각 침실에 적용되는 스마트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의 통합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의 경우 특정 전자기기에 한하여 호환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각 세대별 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이 시공 됩니다. • 보일러가 설치되는 다용도실 또는 창고,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소방법에 근거하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의 관경 및 인입경로, 가스계량기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 인입을 위한 날개벽이 계획되어 견본주택과 다르게 창호 위치가 날개벽만큼 이동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오배수관, 급수급탕분배기는 아래층 세대의 해당 위치 천장 내에 설치되며 상층 세대 사용 시 생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최하층 세대의 경우 동파방지를 위해 급수급탕분배기는 당해 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세대에 2개의 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 난방온수분배기의 위치상 주방 구역 및 복도구간, 알파룸, 부속실 등 일부는 별도의 실별 난방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난방 및 온수공급을 위한 개별 가스보일러가 설치되며 사용 시 보일러 가동 소음과 진동이 발생합니다. 또한 보일러 가동 특성상 수전에서 온수가 나오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특정세대 내에 가스정압기(감압기) 또는 신축 엘보가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에 환기장치나 연결덕트, 기타 환기덕트, 상부층 배수관 등은 부득이 천장에 노출 설치됩니다. • 가변형 벽체 여부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난방제어구획, 스프링클러헤드와 환기 디퓨저의 배치와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호스 내 고인 물은 퇴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스마트스위치/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반 및 단자함의 위치는 침실 내부이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본 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덕션, 하이브리드 등 전기 쿡탑 용량은 3kw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추후 3kw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할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안방 발코니, 주방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실외기실, 대피공간) 천장고는 단열재 설치로 견본주택 대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전동 빨래건조대가 설치 될 경우 발코니 등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팬트하우스(134,137,157,159형) 세대의 테라스 하부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테라스 우수배관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팬트하우스(134,137,157,159형) 세대의 테라스에는 하부세대용 통기배관이 노출 설치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홈 서비스	•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해야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홈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 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합니다.) •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열림 및 주차 위치 안내 서비스는 개발 여건에 따라 명칭, 적용범위, 적용시점, 사용 방법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시스템 동작을 위하여 OS버전은 Play Store(안드로이드) 및 App Store(iO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열림 서비스는 더샵 스마트폰 어플이 실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블루투스 센서 기능이 없는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주차 위치 안내 서비스는 더샵 스마트폰 어플이 실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상태로 주차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블루투스 센서 기능이 없는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및 NFC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일부 모델은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세대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 가능하나, 보안상의 이유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단일 인식번호로 생산된 일부 카드와 스마트폰 등록 시, 같은 종류의 다른 카드 혹은 다른 스마트폰에 대해서 동일하게 인식되어 문이 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단, 등록 여부 판단의 주체는 도어락 제조사가 아닌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한 신용카드 및 스마트폰은 보안상 이유로 공동현관 자동출입문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세대 통신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음성인식 스피커 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한 제조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외관 디자인 및 규격, 사양, 재료, 구성품은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음성인식 스피커의 구성 및 기능, 연결, 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 설치장소, 품질보증, 고객서비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품사양 등은 제품박스 개봉 시 동봉되어 있는 사용설명서를 참조바라며 음성인식 스피커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입주민이 직접 해당 업체 고객센터로 접수하여 해당 업체의 AS정책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 • 음성인식 스피커의 A/S정책은 제품 보증서에 기재된 A/S정책에 준하며, 기상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키분출일로부터 품징보증 기간을 기산함. • 대화형 더샵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스코건설 더샵 단지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및 인증, 포스코건설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월패드 동기화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하며, kakao i 연동 스피커, 카카오톡과 연동하기 위한 카카오 계정 생성, 헤이카카오 앱 및 카카오홈 앱의 스마트폰 다운로드 및 계정 연동, 카카오톡-플러스 친구추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 kakao i 연동 세대별 IoT 제어 서비스(조명 제어 등) 및 일부 정보 기능(에너지 사용량 조회 등) 연동 비용은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10년간 무상이나, 카카오의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 헤이카카오, 카카오홈 앱, 카카오톡을 통해 더샵 홈네트워크와 제어기능(조명제어 등), 정보기능(에너지 사용량 조회 등) 서비스의 다중 사용자(가족 구성원), 다중 기기(Kakaomini)연동은 카카오의 운영정책에 따라 기능에 대한 명칭, 적용범위, 적용시점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홈 앱, 헤이카카오 앱 음성제어 및 카카오톡 챗봇의 세대 기기제어와 정보확인 서비스 제공범위는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헤이 카카오를 통한 음악, 라디오, 팟캐스트, 카카오톡, 알람, 타이머, 날씨, 뉴스, 날짜, 시간, 주식, 환율, 운세 등의 카카오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생활편의서비스는 카카오의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일부 기능(멜론을 통한 음악듣기 등)은 이용요금 결제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과금의 주체는 ㈜카카오입니다. • 더샵 스마트폰 어플 실행을 통한 세대 디지털 도어락의 문열림 기능은 불가합니다. • 삼성전자 - 삼성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설치 후 이용 가능 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더샵 통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 옵션 제공품목 이외 입주민이 개별 구매 후 포스코건설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 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의 종류(9종: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 및 서비스 기능은 사업주체 및 삼성전자의 운영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삼성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환경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smartthing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빅스비 사용 환경은 삼성홈페이지(https://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삼성전자 IoT 홈 기기의 와이파이 연결을 위한 통신사별 인터넷 상품은 미포함으로 별도가입을 권장합니다. 또한 세대별 삼성전자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 비용에 한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홈IoT 플랫폼 제공사 정책에 따릅니다. • LG전자 - LG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LG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설치 후 이용 가능 하며, LG ThinQ 앱에 제품등록 및 더샵 통합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분	내용
	- 옵션 제공품목 이외 입주민이 개별 구매 후 포스코건설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iQ Home)과 연동 가능한 LG전자 생활가전 제품(8종: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의 종류 및 서비스 기능은 사업주체 및 LG전자의 운영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LG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LG ThinQ 앱 사용 환경은 LG전자 홈페이지(www.lge.c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세대별 LG전자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 비용에 한하여 입주 지정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 IoT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전화 시 홈IoT 플랫폼 제공사 정책에 따릅니다. • SKT연동 - SKT NUGU Smart Home NUGU . 및 음성인식 서비스를 통하여 세대 기기 제어 및 세대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더샵클라우드와 연동되어 SKT 스마트홈, NUGU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10년동안 무상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이 후 서비스제공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SKT 스마트홈 IoT 홈 기기의 와이파이 연결을 위한 통신사별 인터넷 상품은 미포함으로 별도가입을 권장합니다. - SKT스마트홈, NUGU 음성인식서비스 中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서비스의 경우, IoT 연동 가전기기를 구매하시면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SKT스마트홈, NUGU 음성인식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사의 성능 개선이나 입주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전자투표, 방송TTS와 같은 부가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SKT스마트홈, NUGU 음성인식서비스 이용을 위한 앱 사용 환경은 SKT SmartHome 홈페이지(www.sktsmarthome.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KT연동 - 더샵클라우드와 연동되어 KT 기가지니 홈IoT, 기가지니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10년동안 무상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이후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관련 관계사들과 논의/협의 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KT 기가지니 홈 IoT 기기의 와이파이 연결을 위한 통신사별 인터넷 상품은 미포함으로 별도가입을 권장합니다. KT 기가지니 홈IoT, 기가지니 음성인식서비스 中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서비스의 경우, IoT 연동 가전기기를 구매하시면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KT 기가지니 홈, 기가지니 음성인식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사의 성능 개선이나 입주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KT 기가지니 홈, 기가지니 음성인식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용 환경은 KT 기가지니 홈페이지(https://gigagenie.kt.com/main.do)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Ⅸ 기타 사항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의무사항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 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 난방에서 단열재 설치를 준수
	방습용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 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신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제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 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3호)	수변전 설비(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 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 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고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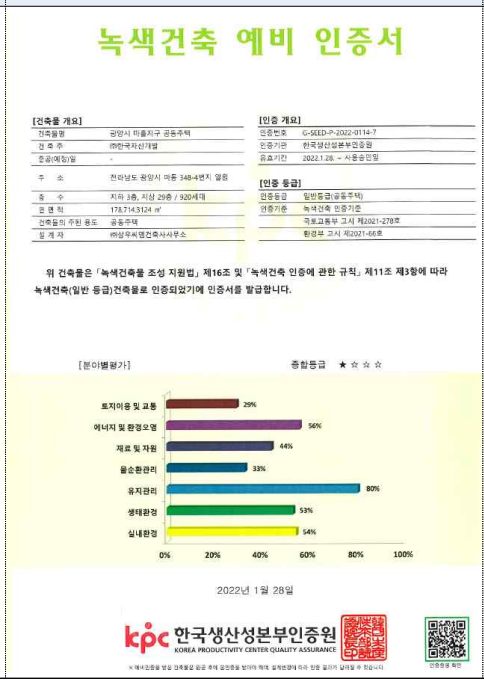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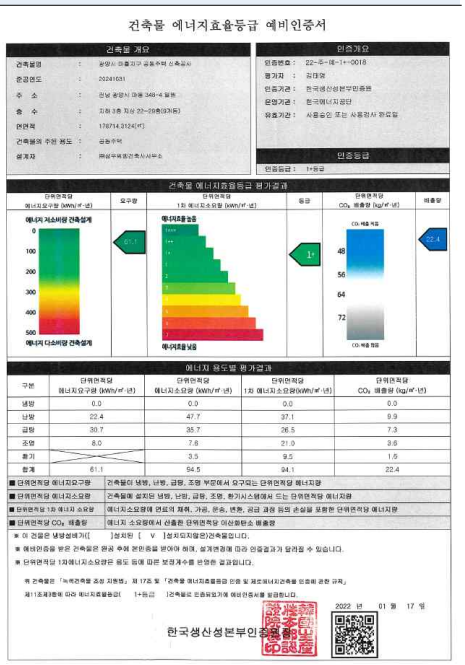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태양이엔시	㈜디아이지엔지니어링	
감리금액	3,754,575,000	768,425,455	353,100,000	77,000,000
사업자등록번호	124 – 81 - 52860	211 – 81 - 00633	410 – 86 - 92337	

※ 상기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이 경우 별도정산 하지 않음.)

▣ 택지비 및 택지비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금액(원)
㈜대화감정평가법인	12,992,143,000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주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01282022 – 101 - 0011700호	256,913,02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약관 (보증사고, 보증채무의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

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보증회사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람(1566-9009)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확인

• 본 건축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한국자산개발, 토지를 수탁 받은 매도인 겸 사행수탁자(신탁회사) 교보자산신탁㈜ 및 시공사 ㈜포스코건설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본 조의 내용은 본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위 분양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한국자산개발이 교보자산신탁(주)에게 사업부지 및 시행을 신탁하여 진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 실질적인 분양사업자는 ㈜한국자산개발임을 분양계약자는 인지한다.

② 본 계약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보자산신탁(주)은 관련법률 및 본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제반의무 (분양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하여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넘는 책임은 ㈜한국자산개발이 부담한다.

③ ㈜한국자산개발의 신탁 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분양계약자에게 위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본 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가 부담하는 제반 권리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한국자산개발 (지위의 승계가 있을 경우 그 승계인)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동의한다.

⑤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기타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사업주체 / 시공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시행수탁사	시행위탁사	
상호	교보자산신탁(주)	㈜한국자산개발	㈜포스코건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498-1(중동)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괴동동)
법인 등록번호	110111 - 1617434	204611 - 0061358	174611-0002979

▣ 분양안내 홈페이지 : (www.더샵광양라크포엠.com)
▣ 견본주택 주소 : 전남 광양시 공영로 91 (중동 1732-2)
▣ 분양문의 : ☎ 1566 - 5535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견본주택 안내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견본주택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